

#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sup>1)</sup>

*The Proposed Bill on Old Age Preparation  
and Its Significance and Challenges*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노후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발의된 “노후설계 지원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의 발의는 실로 우리사회의 질적 도약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뜻깊은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의 발의는 겨우 첫 걸음을 뚝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책입안자의 행보 또는 관심 및 의지와 무관하게 노후설계지원법이 입법화되고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이 제정된 후 국민들을 비롯해 사회 각 주체의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해 형식적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후설계지원법(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노후준비에 관여하던 기존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축적된 자원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사회의 고령인구가 얼마만큼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구 고령화와 그에 대한 성공적 대응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미래사회 핵심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의미는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노년기는 더 이상 ‘나머지’ 삶이 아니며 오히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정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다.

이처럼 누가 노년기를 잘 보내느냐에 의해 개

인적 삶의 성공이 가능되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면, 이는 곧 노년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실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 노년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노후설계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노후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발의된 “노후설계 지원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의 발의는 우리

1) 이 원고는 ‘이소정·박인(2012).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사회의 성공적인 고령사회 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전국민의 노후설계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주체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는 선언을 함축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던 노후설계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법안을 통해 구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후설계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의 발의가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 1.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

노후설계지원법(안) 발의에 앞서 과연 별도의 독립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곧 이미 제정되어 있는 타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노후설계지원법의 기능과 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노후설계지원법과 연관성을 갖는 법률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평생교육법」, 「국민건강법」 등이 있다. 이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법에 속하는 법률들로서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노후설계에 관한 의무조항 등을 삽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후생활에 필요한 설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규정하

기가 적합하지 않다. 「국민연금법」은 현행법령 중 실제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규정조항을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서비스 내용이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종합상담 등 재무적 관점에 머물고 있으며 그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고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관련 고유 업무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업무범위까지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노인복지법」은 다양한 노인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으나 대상층이 노인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보호·복지사업, 사회복지상담,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고 있어 노후설계서비스의 상당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가 동법 제2조 1호 가목 내지 서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사업에 한하고, 이러한 법률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등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노후설계서비스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표면적으로는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

로그래밍의 개발 등 주로 가정 단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평생교육법」은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포괄하지만 노후설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유형이 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사례관리까지 포괄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그 밖에 「국민건강법」은 국민 건강에 초점을 둔 법률이라는 점에서 건강뿐만 아니라 재무, 여가 등 종합적인 면에서 노후설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기존의 법률은 독자적 제정목적과 그에 따른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목표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이미 제정된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노후설계서비스의 목표와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노후설계서비스 고유의 입법목적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 2. 노후설계지원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발의된 노후설계지원법(안)은 제 1장 총칙을 비롯하여 모두 8장,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노후설계에 관한 각종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2장은 노후설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담아 이

법안이 선언을 넘어 현실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제 3장은 노후설계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시킨 장으로서, 노후설계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노후준비지표의 제공 및 보급과 노후준비기준선의 마련, 노후설계서비스의 유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 노후설계 서비스의 4대 분야로서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설계 등의 정의를 담고 있다. 제 4장은 노후설계지원 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노후설계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노후설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후설계위원회를 둘 것과, 중앙노후설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후설계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전달체계로서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이 제 12조와 13조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지정 및 운영되며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조사/연구/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의되고 있다. 또한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정되는데 노후설계를 위한 기본서비스의 필수 제공과 심화서비스 선택 제공을 비롯해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규정되고 있다. 제 5장은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노후설계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을 양성 및 배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 공인력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제 6장은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정보시스템 및 공사연금 연계 포털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제 7장은 보칙, 제 8장은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설계지원법(안)의 개요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노후설계에 관한 선행연구도 많지 않고 외국의 사례도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를 예비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발의된 노후설계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의를 갖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주체마다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활용하고 있었던 노후설계에 관한 주요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령, “노후설계”란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관하여 미리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노후설계서비스”란 노후설계에 관한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밖에 “노후준비지표” “노후준비기준선” 등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제반 정책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둘째, 노후설계지원법(안)이 단지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법률에 그치지 않도록 노후설계에 대한 정책적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법안의 제 2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그림 1. 노후설계지원법(안) 개요

제 1장 총칙	▶ 목적 ▶ 정의	▶ 국가의 책무 ▶ 타법과의 관계
제 2장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노후설계서비스 실태조사
제 3장 노후설계서비스	▶ 노후설계지원사업 ▶ 노후준비지표 및 노후준비 기본선	▶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 ▶ 노후설계서비스의 분야
제 4장 제공기관	▶ 노후설계위원회 ▶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평가
제 5장 제공인력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인력 ▶ 제공인력 결격사유	▶ 제공인력의 금지행위 ▶ 보수교육의 실시
제 6장 정보의 제공 등	▶ 노후설계서비스 정보의 활용 ▶ 개인정보 보호	▶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 연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주: 제 7장 보칙, 제 8장 벌칙

5년마다 국민의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정책사항을 행정기관 내에서 협의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안의 5조 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실태에 입각한 정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법의 제정을 통해 전 국민이 노후설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실제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제 8조의 노후준비 기본선에 관한 조항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즉,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노후준비 수준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후준비는 실천으로 옮기기에 지나치게 추상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가 노후준비 기본선을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 정도를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 8조 2항에 노후준비 기본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기준선을 심의 및 수정하는 기구로서 중앙 노후설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제 8조 3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스스로의 노후준비 정도를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 가이드라인(노후준비 기본선), 심의기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법을 통해 구체화시킴으로써 노후설계지원법(안)의 정책적 실효성을 강화시켜주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후설계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법안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다. 제 9조에서는 노후설

계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기본서비스와 심화서비스로 구분해, 기본서비스에는 상담 및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됨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노후설계서비스가 기관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교육만, 어떤 경우에는 상담 및 연계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등 제각각의 형식을 띄고 있었는데 법안은 노후설계서비스의 범주가 상담 및 교육에서부터 연계서비스, 사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서비스를 단계별로 기본서비스와 심화서비스로 구분해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노후설계서비스의 형식에 관한 조항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후설계서비스가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재무, 대인관계, 건강, 여가 등 4대 분야 중심의 노후설계 서비스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노후설계 심의 기구를 규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구의 설치를 명확화 함으로써 노후설계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노후설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동참을 법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제 11조인데, 여기서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중앙 및 지역 노후설계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노후설계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욕구 변화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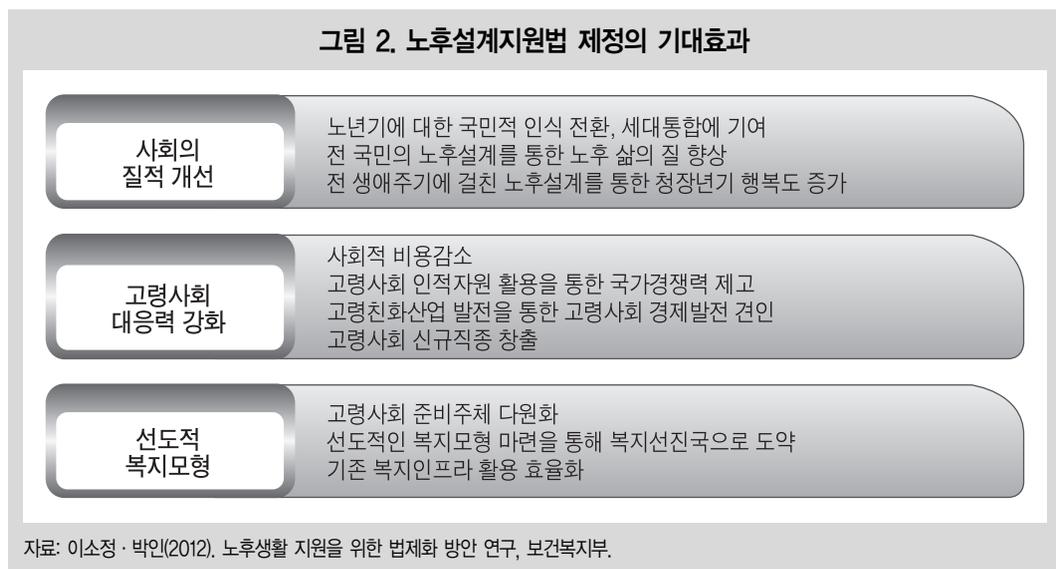
라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는 노후설계서비스의 현실적합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협의체적 기구로서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제12조와 13조에서는 노후설계지원 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체로서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12조),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3조). 노후설계서비스의 최일선 전달체계인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유관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섯째, 노후설계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 제 24조에서는 노후설계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제공,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 25조에서는 공사연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무설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3. 노후설계지원법(안)의 기대효과

노후설계지원법(안)을 통한 기대효과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크게 우리 사회의 질적 개선의 측면,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력 강화의 측면, 그리고 선도적 복지모형 마련의 계기로서의 측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우리 사회의 질적 개선

노후설계지원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엇보다 노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세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년기는 걱정스럽고 지연시키고 싶은 생애의 한 단계로 인식되었으나 미리부터 노년기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노년기는 더 이상 ‘위기의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인생의 꽃’인 시기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즉, 피하고 싶은 노년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노년으로 사회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사회에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가 통합되고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 국민의 노후설계를 통해 노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인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한편 이러한 지표의 원인은 노후에 대해 개개인이 미리부터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노인의 다수가 노년기에 일종의 아노미(anomie)를 경험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노후설계를 통해 미리부터 자신의 노년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함으로써 노인 자살률 감소,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고령사회 대응력 강화

노후설계지원법(안)의 보다 직접적인 기대효과로는 바로 본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령사회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노년에 대해 개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의료비 지출이 높은 상황이라 의존적인 노인 집단이 증가하게 된다면 국가 재정지출의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개인이 경제적인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건강, 대인관계, 여가, 커리어 등 삶의 다차원적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더욱 풍요롭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복지 의존적인 노인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 재정지출 요인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후설계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에서 정부 재정지출 절감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령사회의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미리부터 노후설계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준비함으로써 고령사회 인적자원 활용을 지금보다 훨씬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서 고령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문제는 그 사회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리부터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함으로써 고령사회에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령친화 산업 발전을 통한 고령사회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전 국민이 노후설계에 동참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혹은 수요의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고령친화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국민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면 공공부문 서비스를 넘어서 민간에서 보다 맞춤형, 심층형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민간 노후설계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노인들은 미리부터 여가 등을 즐기거나 자신의 여가를 계획하지 못함으로써 적극적인 노후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후 여가 준비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활성화 된다면 이에 부합해 노인 여가문화 콘텐츠 시장, 민간 노인 여가문화 인프라 등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노후 생활양식의 전반적인 변화는 식생활, 의생활 등 기타 파생적인 시장 견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친화 산업(실버산업)의 성장은 고령사회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고령사회형 신규직종(일자리)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의 노후설계 참여는 노후설계사와 같은 신규 직종 창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노후 일자리 창출이 정부 주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다 보니 그 내용에 있어 획일성을 벗어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노후설계를 통해 개인이 자율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모델과 성공사례가 등장함으로써 고령사회형 신규직종 창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 3) 선도적인 복지모형 마련의 계기

노후설계지원법(안)은 노인복지 분야의 새로운 정책시도일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우리나라 복지 모형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안을 통한 노후설계지원 서비스의 구축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드문 선도적인 복지모형으로서 우리나라를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 그러나 노후설계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외국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의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다. 즉, 외국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개발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 역전과도 가능한 사회정책 모델로서 노후설계서비스는 자리매김될 수 있다.

둘째,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구축을 통해 기존 복지 인프라의 활용을 더욱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여 년간 우리사회의 복지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복지 인프라도 양적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확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 어떤 인프라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정보의 부재, 활용 방법의 부재 등 접근성 제약에서 기인한다. 노후설계 상담의 활성화로 인해 개개인은 기존에는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했던 복지 인프라를 전문인력으로부터 소개 및 연계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문제로 활용도 낮았던 기존 복지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고령사회 준비주체를 정부중심에서 개인, 기업, 민간, 정부의 역할분담으로 다원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노후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의 동참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전 국민의 노후준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시장)의 인프라도 노후설계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주체가 정부 일방에서 벗어나 개인, 기업, 민간(시장) 등으로 주체가 다원화되는 것이며 진정한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4. 향후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설계지원법(안)의 발의는 실로 우리사회의 질적 도약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뜻깊은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의 발의는 겨우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법안이 목표로 하는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은 우리나라 다수의 복지정책이 그러하듯 아래로부터의 욕구가 법안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bottom-up) 정책입안자, 또는 전문가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국민적 욕구나 관심사와 무관하게 제안되고 발의되었다(top-down). 따라서 지금까지 노후설계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의 행보는 다분히 정책입안자의 관심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법안이 발의된 지금, 정책입안

자의 행보 또는 관심 및 의지와 무관하게 노후설계지원법이 입법화되고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이 제정된 후 국민들을 비롯해 사회 각 주체의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해 형식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주체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히 기업 등 민간영역의 동참을 얼마만큼 유도하는가가 향후 법이 제정된 후 정책의 실효성 및 성패를 가늠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발의된 현재까지도 노후준비 특히 다차원적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은 낮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노력에 당분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후설계지원법(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노후준비에 관여하던 기존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축적된 자원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노후설계라는 블루오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조직논리와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는 현상은 무엇보다 경계되어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의 노후준비와 성공적인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장점과 노하우를 살려 노후설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